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7034
----------	-------

제출연월일 : 2026. 2. 2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전염병의 종류
2.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자 및 장소
3.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내용
4.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을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가축방역관

에게 제1항”을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사람 및 차량 등의 방역조치 방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또는 제6호”를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

·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람, 가축, 오염우려물품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를 “시설출입차량, 종사자,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로 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제4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제60조제2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11까지를 각각 제5호의3부터 제5호의12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11(종전의 제5호의10) 중 “제17조의6제1항”을 “제17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5의2.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u>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 ----- ----- -- <u>다음 각 호의</u> ----- ----.
	1. <u>가축전염병의 종류</u>
	2. <u>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자 및 장소</u>
	3. <u>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내용</u>
	4. <u>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u>「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u>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u>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u>

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 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 및 본인이 소유·운영하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illegible]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생 략)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는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사람 및 차량 등의 방역조치 방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 ----- --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3항-----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 -----

나 폐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② ~ ⑨ (생략)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람, 가축, 오염우려물품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 한다), 계약사육농가 및 축

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

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설출입차량,

종사자,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3. (생 략)

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4(손해배상청구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가축 살처분 비용, 가축의 사체 매몰·소각·화학적 처리 등의 비용, 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u>제5호까지</u>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 ----- ---- <u>제5호까지 및 제7호</u> ----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u>5의2. ~ 5의9. (생략)</u>	<u>5의3. ~ 5의10. (현행 제5호의2부터 제5호의9까지와 같음)</u>
<u>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u>5의11. 제17조의6제1항 또는 제3항</u> ----- -----
<u>5의11. (생략)</u>	<u>5의12. (현행 제5호의11과 같음)</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